

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기본협약

전 문

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와 금속산업광주전남지역사용자협의회(이하 “사용자협의회”)와 금속산업광주전남지역 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자·개선함으로써, 조합원의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금속산업과 회사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약속한다.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[협약의 우선 적용]

본 협약은 조합과 사용자협의회와 회사가 맺은 기본협약으로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근로기준법,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,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및 사업장 단체협약에 우선한다. 다만, 사업장 단체협약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.

제 2 조 [사용자단체 가입]

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사업장 관계사용자는 광주전남지역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조합과 지부 집단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.

제 3 조 [교섭 단체]

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·노동조건·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.

제 4 조 [기본협약 준수조치]

사용자협의회는 미 합의한 회사 및 향후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는 금속노조 관계 사용자에 대해서는 기본협약을 준수하도록 조치한다.



제 5조 [복수노조 창구단일화]

복수노조 시 노사가 합의하는 자율적 교섭방식을 준수한다.

제 2 장 조합활동 보장

제 6 조 [조합 활동시간]

- ① 회사는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서 진행되는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는 조합간부(상집간부 및 대의원)에 대하여 연 2회 각 8시간 또는 연 1회 1박 2일의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.
- ② 조합은 최소한 1주일 전에 문서로 회사에 통보한다.

부 칙

제 1 조 [협약의 유효기간]

-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.
-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.

2019년 9월 25일

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

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 관계 사용자

위원장

김 호 규

광주전남지부장

김 현 석

성원지회장

이 상 필

위니아딤채지회장

정 우 성

캐리어에어컨지회장

이 현 석

주식회사 성원 대표이사

오 권 석

주식회사 위니아딤채 대표이사

김 혁 표

오텍캐리어 주식회사 대표이사

현 병 택

별도합의서

【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】

산별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에 참여
하지 않은 사업장은 노사공동위원회 참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한다.

2019년 9월 25일

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

위원장

김 호 규

광주전남지부장

김 현 석

성원지회장

이 상 필

위니아덤채지회장

정 우 성

캐리어에어컨지회장 이 현 석

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 관계 사용자

주식회사 성원 대표이사

오 권 석

주식회사 위니아덤채 대표이사 김 혁 표

오텍캐리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현 병 택